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COVER STORY: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1

▶ FTA NEWS:
한-미 FTA 비준! FTA 검증
준비되었습니까? 2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특집 기획시리즈⑧
수출입 세비② 3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⑥ 5

▶ WHERE IS GRACE CHANG?:
명경(明鏡) 7

▶ ABOUT WRITERS 7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관세행정상 가산세 부과는 품목분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IT 산업발전과 함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지속적인 상품의 진화로 품목분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통관시 세번 결정이 애매한 품목, 분류상 문제가 제기된 품목 및 세관당국에서조차 분명한 세번 분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한 품목도 가산세부과대상이었다. 이제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도입은 관세사의 숙원 과제이었다. 2004 년 초부터 관세청과의 워크숍, 기획재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관세전문가 그룹인 관세포럼 등에서 꾸준히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 년 3 월 관세법 시행령 제 39 조 제 1 항 제 5 호의 신설로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관세를 신고 납부한 날부터 6 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과부족이 발견되어 수정 또는 경정 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에게 관세법상 신고납부세액의 산정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납세자는 불복청구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면제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 왔다.

사실 관세행정상 가산세 부과는 품목분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IT 산업발전과 함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지속적인 상품의 진화로 품목분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통관시 세번 결정이 애매한 품목,

분류상 문제가 제기된 품목 및 세관당국에서조차 분명한 세번 분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한 품목도 가산세부과대상이었다. 예컨대, WCO 에 질의하거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가 요청되는 등 고도의 품목분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권익은 보호되고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나 예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당한 사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용기준을 살펴본다.

정당한 사유의 적용기준에 관한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특히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신고물품과 동일·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과거 동일 적용 세번 등으로 통관이 인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수입된 물품, 품목분류 등의 종래의 취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물품, 기타 각 세관에서 관세국과 협의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경우, 수입자가 수출국의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증명서에 기초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미국은 내국세법과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법은 가산세 면제 사유로서 합리적 이유(Reasonable Cause)를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준수할 수 없었고, 이러한 납부세액의 결정에 통상의 경영상 주의를 다하였을 때 성립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선의로 행동하여야 하며, 법규준수를 다하지 못한 이유가 고의적인 태만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미관세법은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자, 관세사 등은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평가가격 제고,

세관의 최종 품목분류 결정과 물품가격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정확한 서류준비를 위한 조치, 발행 서류의 법령 충족여부의 결정 등이 해당된다.

기존의 관세행정상 판례, 결정례 및 살페본 외국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려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령에 대한 부지·착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인지할 수 없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과세관청과의 견해의 대립, 과세관청의 연동에 의한 법률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에는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히, 품목분류의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히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을 정리하고, 일본·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세사의 숙원 사업으로 도입된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이 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관세사회

연구실장 김 중 근

(joongyenkim@hanmail.net)

FTA News

한-미 FTA 비준! FTA 검증 준비되셨습니까?

한-미 FTA 발효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8 개의 FTA 협정, 총 45 개 국가와의 FTA 가 발효되는 것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혜택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업체는 FTA 관세혜택의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FTA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한-EU FTA 에 이어 한-미 FTA 발효도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검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미 FTA 이행법안” 이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미측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에, 우리정부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한-미 FTA 는 발효가 된다.¹

한-미 FTA 발효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8 개의 FTA 협정, 총 45 개 국가와의 FTA 가 발효되는 것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산제품의 관세혜택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업체는 FTA 관세혜택의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FTA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한-EU FTA 에 이어 한-미 FTA 발효도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검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FTA 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이란?

FTA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서류·거래당사자·세출·운송경로·신청절차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검증은 FTA FREE RIDER 의 양산방지, 관세탈루·공정무역질서의 문란의 방지, 통상분쟁의 방지 등의 역할을 하여 FTA 를 순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2) 관세청 등의 검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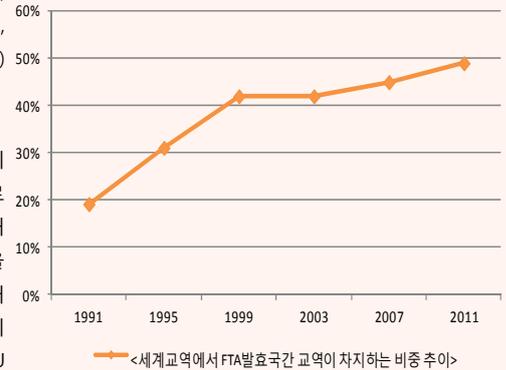
검증은 수출원산지검증과 수입원산지검증으로 구분·실시하며,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이 적용되며 그 방법에는

간접검증, 직접검증, 직·간접검증 혼합, 검증참관, 공동검증 등의 방법이 있으며, 검증의 기법에는 서면검증(서면질의, 정보요청)과 현지검증(방문조사)이 있다.

(3) 검증의 대비

실제로 최근 외국 세관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FTA 사후검증(원산지 검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2011 년 9 월 현재 FTA 상대 체결국의 세관으로부터 사후 검증을 요청 받은 건은 49 건으로 이는 작년 대비 6 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 월 1 일에 발효된 한-EU FTA 의 경우, 벌써 EU 회원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을 받고 있다. 이는 수출업체뿐 아니라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대상이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교역에서 FTA발효국간 교역 비중>



2. 검증사례와 CHECK POINT

그렇다면, 실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검증 대비를 위한 CHECK POINT (예시)

I. 원산지신고서 적정 발급 확인

- √원산지 증명서 발행여부 확인
- √원산지증빙서류² 보관여부 확인
- √원산지증빙서류 증빙서류 보관방법 확인 (서류, 전자적 형태 보관 가능)

II. 수출신고내역 및 원산지증명여부 확인

- √발급된(한) C/O 와 상업서류, 수출면장상의 기재내역 일치여부 확인
- √발급된(한) C/O 상 기재사항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
- √발급된(한) C/O 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생산공정 기술내역 확인

[미국 예시] 서면

서면조사 통지서			
통지번호:			
대상자	상 호	A 기업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생 보 활 일	2008년 09월 01일	
조사처	시정당무소	시정서 장남구	
<용 기 록>			
조사기간	2011.11.25 - 2011.12.24	대상기간	2011.5.1 - 2011.5.31
조사대상	포괄적 수입품		
조사내용	포괄적 수입품의 원산지 확인 요청		
조사내용	- 조사내용: 경제·통관 여부 및 원산지기타 무역 여부 등 - 검토내용: 원산지 증명		
제출서류	명칭	제출기간	2011.11.24
합의사항	시정서장에게 제출할 서류 000 의		
<p>[미국주요법령의 이해를 위한 통관청의 특별 무역] 제(2009)112호 조은 등 시정서장에게 따라 서면조사통지서 하고자 여기하고나 제(2010)112호 기한 내에 제(2010)112호에 부합하지 않음 기한 내에 기한은 제(2010)112호에 부합하는 조은 등 제(2010)112호 따라 특별무역 제(2010)112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2010)112호</p> <p>2011년 11월 0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정 서 관 장</p>			

- √생산장비보유 및 생산능력에 대한 입증 가능여부 확인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충족 증빙
- √세번(HS CODE)의 결정방법과 적정분류 확인
- √모든 원재료는 BOM 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역내산 원재료 입증서류 보관여부 확인
-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상기내용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 여부 확인
- √물품의 생산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 √물품의 생산 중 일부가 OEM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 √물품의 생산 중 일부가 국외(개성공단 포함)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III.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 √C/O 상 물품은 수출국으로 직접 운송되고, B/L 등으로 입증가능한지 여부 확인
- √제 3 국에서 하역 및 환적이 이뤄지는 경우 제 3 국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있었음을 입증가능한지 여부 확인
- √제 3 국에서 추가가공이 있는 경우, 가공의 범위 확인

상기한 내용은 검증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예시일 뿐 모든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충분한 검증대비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각 업체는 자신의 수출 품목별 · FTA 별 맞춤형 검증의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대비하여야 할 검증내용은 모두 FTA 협정에 정해진 절차적 사항으로서, FTA 적용 시에 이를 충실히 따른다면 검증은 자연히 대비가 될 것이다. 모든 혜택에는 그에 대비되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FTA 도 마찬가지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조 정 윤
([jycho@customsservice.co.kr](mailto: jycho@customsservice.co.kr))

¹ 한-미 FTA는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 서한이 교환되고 이로부터 60 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공식 발효된다.

² 수출신고필증사본, 상업송장 및 거래계약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B/L, 원가산출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등

※ 기업에 대한 세관제출요구자료 LIST (예시)

NO.	구분	요청자료 내역	비고	
1	원산지 결정	원산지소명서(시행규칙 별지 1 호 서식)		
		원산지신고서 사본		
2	원산지증명서	검증대상품목 제품설명서	품목번호(HS)의 적정성	
		검증대상품목 생산공정 설명서	사진 첨부, 공장등록증 등	
3	품목 일반	검증대상품목 제조 관련 업무기술서, Flow Chart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4	당해물품 조정가격	해당상품의 수출관련 제반서류	수출신고서, 매매 계약서, invoice, Packing list, 외화입출금내역(수출대금영수), L/C 등	
		해당상품의 가격결정자료	내부품의서 등	
		해당물품의 수출매출보조부, 매출전표		
5	직접운송	단순 경우 입증서류	경유지 세관 발행	
		운송서류	B/L(AWB) 등	
6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관련 제반 서류	세관 제출자료 사본 등	
7	재료비		BOM	원재료 별 HS code 기입
	원산지 재료	국내매입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원산지확인서	
			거래처의 일반현황 제조시설 및 공정도	
	자체 생산 (중간재)	BOM	원재료 별 HS code 기입	
원산지확인서				
비원산지재료	자체수입	해당원재료의 수입관련 제반서류	수입신고필증, invoice, B/L(AWB) 등	
	수입재료국내매입	해당원재료의 수입관련 제반서류	수입신고필증, invoice, B/L(AWB) 등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⑧

수출입 세비(稅費)②



지난 호 수출입세비 개요①에서 살펴본 관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수입단계에서 해관이 대신 징수하고 있는 세금(증치세, 소비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다음 호에서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선박톤세, 세금 체납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입단계 해관 대징세(进口环节海关代征税)

수입화물, 물품이 해관의 모든 절차를 끝내고 국내 유통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국내화물과 동등하게 취급 받게 되며, 내국세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수입화물, 물품에 대한 내국세는 해관이 수입단계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수입단계에 해관에서 대신 징수하는 세금(약칭하여 '수입단계대징세')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부가가치세(증치세, 增值稅)

가. 의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노무서비스 등 각 단계별로 창조되는 새로운 가치 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거래세(流转稅)이다.

나. 징수납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는 해관에서 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징수한다. 기타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게 된다.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조성가격을 세금계산가격으로 한다. 세금부과 시에는 어떠한 세액이라도 공제할 수 없다. 수입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조성가격은 관세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품일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소비세액까지 더한 가격으로 한다.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세율의 조정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 감면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르며, 어떠한 지구나 부문이라 할지라도 모두 면세나 감면을 규정할 수 없다.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최저 징수금액은 인민폐 50 원으로 하고, 50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과를 면제한다.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징수범위와 세율

중국 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부동산 판매 또는 면세는 제외) 또는 가공, 수리노무 및 수입화물을 제공하는 회사와 개인은 모두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화물이란 판매하는 화물의

출발지와 소재지가 모두 국내에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부가가치세의 징수원칙은 공평(中性)과 편리(簡便), 규범(規範)이며, 기본세율은 저 세율을 추가하는 징수방식을 채용한다. 기본세율(17%)의 적용범위에는 납세의무자가 판매 또는 수입하는 저 세율을 적용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 및 가공, 수리조립노무 등이 포함된다. 저 세율(13%)을 적용하는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다음 화물을 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가 된다.

- 1) 양식, 식용식물유
- 2) 상수도, 증기, 냉기, 열기, 석탄가스, 석유 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주민용 매탄제품
- 3) 도서, 신문, 잡지
-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农膜)
- 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화물

2. 소비세(消費稅)

가. 의미

소비세는 소비품 또는 소비행위의 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다. 소비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소비구조를 조절하고, 소비방향을 유도하며,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소비세는 화물에 대해 보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기초 위에서 소수 소비품을 선택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인 것이다.

나. 징수납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생산, 위탁가공 그리고 《소비세잠행조례》에서 규정한 소비품(이하 납세대상 소비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회사와 개인, 국무원에서 확정한 《소비세잠행조례》에서 규정한 소비품을 판매하는 기타 회사와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중국의 소비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그러나 수입되는 납세대상 소비품의 소비세는 해관에서 대신 징수한다. 납세의무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신고 시에 통관지 해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국은 수입하는 납세대상 소비품에 대한 소비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그리고 복합세의 방식을 채택하여 계산하고 있다.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은 《소비세잠행조례》부칙인 《소비세세목

세율표》에 따라 집행한다.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수입단계 소비세 최저징수금액은 인민폐 50 원으로 하고, 50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과를 면제한다. 수입단계 소비세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징수범위

소비세의 징세범위는 주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현상과 현행 소비정책, 국민들의 소비구조 및 재정수요에 따르며,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법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소비세의 징수범위는 소수의 소비품에 한정한다. 과세대상 소비품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1) 일련의 과도한 소비가 인체 건강과 사회질서, 생태환경 등 방면에 위해를 조성할 수 있는 특수 소비품(예: 담배, 술, 주정, 폭죽, 염화)
- 2) 사치품, 비 생활필수품(예: 귀금속 장식품 및 진주보석과 화장품)
- 3) 고급 소비품(예: 승용차, 오토바이, 자동차타이어)
- 4) 재생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류의 소비품(예: 휘발유, 디젤유(柴油))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세번 추가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개정사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31 조(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취지에 맞게 고시 조문을 재정비

개정내용

① 구매확인서 정의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에서 구매한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재 규정 (안 제 2 조)

② 현행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서류와 발급신청 방법을 명확히 재 규정 (안 제 36 조 및 제 37 조) 첨부서류 중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제출 간주조항 신설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주요내용

무선마이크로폰과 무선마이크로폰세트에 대한 품목분류가 변경(HS8517.62-5000, 8517.62-9000 ⇒ HS8518.10-9000)됨에 따라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세번을 추가

【통신비밀보호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10 조의 규정에서 의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수입가능.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 (대화형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전파법】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제 5 차 HS 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 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에 이를 반영하고 '11 년 기본관세율 개편 등을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WCO HS 협약 개정안(HS2012)반영

① 전세계 식량자원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분류체계 개편

•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 특히 수산물(제 3 류)의 경우 연어류, 대구류, 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증명과 학명으로 구분

②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은화합물*은 품목코드를 통합, 오존층 파괴물질**은 코드 신설

*수은화합물: 13 개의 6 단위코드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 개(2852.10, 2852.90)로 통합

**오존층파괴물질: 기타로 분류하던 것을 별도 품목코드(2903.71 등)부여

③ 신제품 출현 등의 반영을 위해 교역량이 증가한 '바이오피젤(3826)'등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교역량이 적은 '환등기(9008.10)'등은 코드 삭제

④ 기타 HS 단순화를 위해 현행 재질에 따라 분류하던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제 9619 호를 신설하여 통합

나.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개정요청사항 등 반영

① 교역현황 파악 위해 농식품부, 지경부 등에서 요청한 '고추종자(1209.91.3000), 산양삼(1211.20.



1110) 및 봉소합금강(7225.30.9091 외)'등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 95 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응축기, 유기물 혼합기 등 13 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대신에 국내제작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 연료용기, 우드칩 파쇄기 등 13 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에게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항공운송료의 공제가 가능 여부

(HQ544620 1991.12.23)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생산지원비용 등 법정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고 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거래가격에 특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으므로 후 순위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Facts)

수입자(I)는 중국의 수출자(E)로부터 유아용과 소녀용 의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사실은 아래와 같음.

1. I 는 쟁점물품을 통상 선박으로 운송하였으나, Quota 양이 임박한 경우 항공기로 운송하기로 협의 함.
2. 수출자의 항공운송에 대한 보답으로 물품 가격은 인상 되었음.
3. 쟁점물품의 최초수입 시 assist 는 가산하고 해상운송료는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포워드에게 증빙용으로 제출한 항공화물 운송장은 상업송장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들도 있었음.
4. 항공화물운송장 상의 항공운임은 실제 지급된 운임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일단 지재되지 않은 항공화물운송장을 포워드에게 제공하고 포워더는 직접 이 금액을 기재한 후 기재된 금액을 항공사에게 지불 한 후 항공사는 일정금액을 포워드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
5. 재 협상된 가격에 항공운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FOB 가격으로 보아야 함.
6. I 는 항공화물운송장상의 금액이 실제 운송료이며, 실제운송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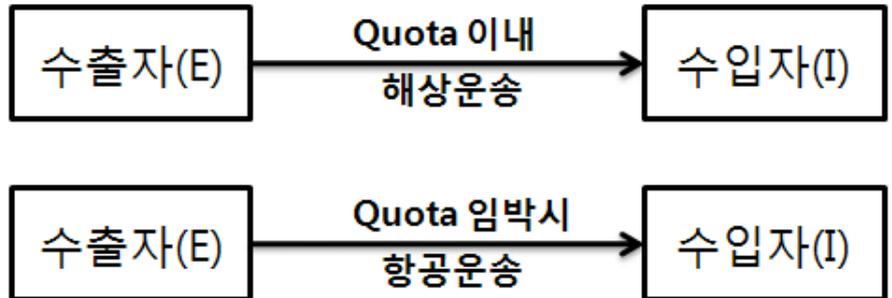
□ 쟁점(Issue)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은 포워더의 Prepaid 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금액보다 낮은 송품장의 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더한 가격이어야 하는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



19U.S.C 1401a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방법이다 이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더한 것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총금액(total Payment)으로 국제운송에 발생한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직·간접으로 지급된 모든 비용임.

USC 1401(b)(2)(A)에 의하여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함.

HRL542467 (1981.8.13)

실제로 소요된 운송료(Actual transportation cost)라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사안검토

I 는 본래 선박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C&F 로 계약 구매 하였고, 후에 또 다시 항공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높은 C&F 가격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이 재조정된 가격은 항공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TAA 402(b)(4)(A)에 따라 국제운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운송, 보험 기타 서비스비용은 총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즉

FOB, EXW 금액으로 재평가 하며, C&F 수입가격에서 제시된 국제운송료 계산하여 조정하여야 함.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실제 항공운송료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항공운송료를 찾기도 힘들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미쳤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따라서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 하며, 2 방법 이하로 평가하여야 함.

□ 결정(Holding)

TAA402(b)(2)(A)(ii)에 의해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명경(明鏡)



장승희 대표 관세사

한 초등학교 2 학년 어린이의 '그림자'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사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며 관찰하여 그림자의 다양한 현상들을 찾아낸 예쁜 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형체가 없는 '그림자'까지도 어린이의 밝은 눈과 맑은 거울 같은 마음에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이즈음 방송에 비치는, 시민들과 약속을 나누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주한 사람과 약속을 나누면서 그 눈은 다음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주한 사람에게도, 다음에 약속할 사람에게도 진실하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돌아다 봅니다.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거울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살펴 봅니다. 흐릿한 눈으로 소중한 대상들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그러진 마음거울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호 cover story 는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관세사회 연구실장인 김중근박사께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품목분류의 어려움과 가산세 면제 가능성과의 연관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FTA News 는 미국에서 비준된 한-미 FTA 의 발효를 기대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상대국의 **검증에 철저히 대비** 하여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검증대비를 위한 check point list 와 준비하고 계셔야 할 자료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는 그에 따른 의무·책임을 완수해야겠지요.

임창환 부산국제우편세관장께서 중국특집으로 연재하고 계시는 Voices from the Fields 에서는 지난 호부터 **중국해관의 수출입관세와 제세**에 대하여 시리즈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는 수입단계에서 해관이 대신 징수하고 이는 증치세와 소비세에 대하여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로 알아보는 관세평가에서는 '운송비용을 처리하는 미국의 관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은 세번이 변경된 무선마이크로폰 및 관세율표 품목분류의 일부개정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우리의 눈을 환하게 합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합니다. 곧, 머지 않아 땅에 떨어져 굴러 다닐 나뭇잎들이지만..... 오늘은 아름다운 계절을 감사하며 즐기시기 바랍니다.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김중근 연구실장
(joongyenkim@hanmail.net)

PROFILE

- 現) 한국관세사회 연구실장
- 現)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 배화여자대학 외래강사

FTA News-

한-미 FTA 비준! FTA 검증 준비 되셨습니까?



조정윤 관세사
(jych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수출입 세비@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 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 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 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 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선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

특정 구매수수료의 과세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